

##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

<19.3.18, 고용노동부>

### 1 공통사항

- 보통사다리(일자형 사다리), 신축형 사다리, 발붙임 사다리(A형)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
-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

### 2 발붙임 사다리(A형, 조경용)

- ①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- ② 경작업\*, 고소작업대·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
  - \*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, 전기·통신 작업,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
- ③ 사다리 작업높이가 1.2m 이상~2m 미만인 경우
  - 2인 1조 작업,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
- ④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~3.5m 이하인 경우
  -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,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
- ⑤ 사다리 최대길이가 3.5m 초과한 경우 :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

### 3 행정사항

- (시행시기) 즉시
- (조치기준) ①보통 사다리(일자형), 신축형 사다리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, ②발붙임 사다리(A형, 조경용) 안전작업지침 미준수, ③모든 사다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시에는
  - 「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」에 따라 조치 (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, '19.7.1부터 조치)

#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!

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

- ▶ 경작업, 고소작업대·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
- \* 경작업 :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, 전기통신 작업, 평탄한 곳의 조정 작업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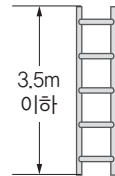
평탄·견고한 바닥에서

- ▶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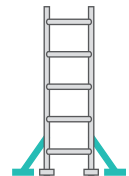


3.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

- ▶ 최대길이 3.5m 이하 A형 사다리(조경용 포함)에서만 작업
- \* 보통(일자형)사다리, 신축형(연장형)사다리,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(A형)에서는 작업금지



적정길이의 사다리 사용



넘어짐 방지 조치(권고)



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

- ▶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,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
- \* 작업높이 :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



2인 1조로 작업하세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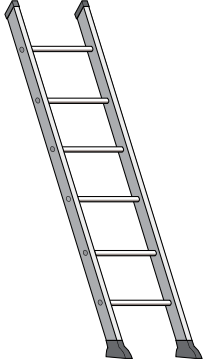
-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
- ▶ 1.2m 이상 ~ 2m 미만 : 2인 1조 작업,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
- ▶ 2m 이상 ~ 3.5m 이하 : 2인 1조 작업,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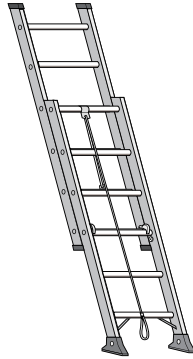
※ 본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→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
#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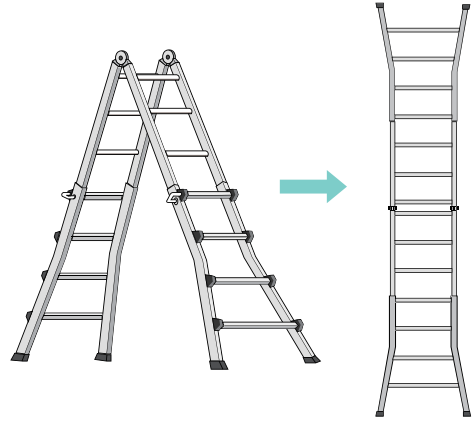
**보통(일자형) 사다리**



**신축형(연장형) 사다리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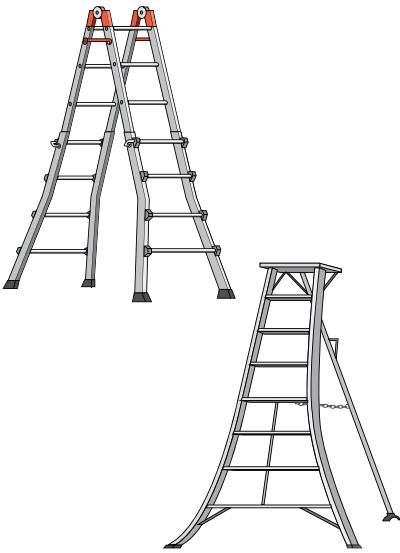
**발붙임 사다리(A형)**  
(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)



**안전작업 지침**

- ▶ 오르내리는 **이동통로로만 사용**(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)
- ▶ 반드시 안전모 착용
- ※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」 준수

**발붙임 사다리(A형, 조경용)**



작업 높이 (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)	안전작업 지침
1.2m미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반드시 안전모 착용</li> </ul>
1.2m이상 ~ 2m미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반드시 안전모 착용</li> <li>● 2인 1조 작업</li> <li>●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</li> </ul>
2m이상 ~ 3.5m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반드시 안전모 착용</li> <li>●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</li> <li>● 최상부 발판 +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</li> </ul>
3.5m초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</li> </ul>

**공통사항**

- ▶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- ▶ 경작업\*, 고소작업대·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
- \* 손 또는 팔을 가벽계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, 전기·통신 작업,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
- ※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」 준수